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條 내지 第33條, 第42條의 2 내지 第42條의 15, 第73條 第4號 및 第5號, 第73條의 2, 第74條第2號, 第75條第4號, 第76條第5號, 第77條第2號 및 第78條의 改正規定은 198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特殊場所의 防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스프링크라設備, 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設置된 消防對象物의 關係者는 당해 消防對象物에서 사용하는 物品에 대하여 1985年 12月 31日까지 防災處理를 하여야 한다.

第3條 (危險物의 貯藏・取扱 및 運搬에 관한 經過措置) 製造所등과 第1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臨時場所에서의 危險物의 貯藏 또는 取扱과 運搬에 관하여는 第14條第3項 및 第2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內務部令이 制定・施行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消防設備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消防設備業의 登錄을 한 者 또는 防災處理者의 指定을 받은 者는 第42條의 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해당 各號의 消防設備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工事業者는 1985年 6月 30日까지 第42條의 4의 改正規定에 의한 免許의 基準에 적합한 施設등을 갖추어 內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期限내에 同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許는 失效된 것으로 본다.

④ 內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가 免許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第42條의 2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하며, 이 경우 同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免許의 更新期間은 免許證을 交付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第5條 (消防設備技士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消防設備技士로서 消防設備工事의 施工管理에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第42條의 12의 改正規定의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內務部長官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第78條에 해당하는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 法 第78條의 規定에 의한다.

2. 外國 防災機關誌에 國內火災事例 掲載

當協會가 1981年부터 會員으로 加入되어 있는 英國의 防火協會(Fire Prevention Association)에서 每月 發刊하고 있는 "Fire Prevention"誌와 오랜 동안 우리 협회와 紐帶關係를 맺어오고 있는 日本의 消防設備安全센터(Fire Protection Equipment & Safty Center of Japan)의 "페스크"誌에 國內火災事例가 掲載되었다. "Fire Prevention"誌에는 '82年 12月 發生한 大邱琴湖호텔 火災와 '83年 4月 發生한 大邱 디스코텍크 火災事例가 '83年度 10月 및 11月號에, "페스크"誌에는 前記 디스코텍크 火災事例가 각각 2폐이지에 걸쳐 仔細하게 紹介되었다.

同 資料는 海外 防災機關과의 相互 資料交換 協助方針 혹은 當該機關으로부터의 要請에 의해 當協會에서 作成, 送付한 것으로서 이는 外國 防災機關과의 紐帶強化와 우리 協會를 널리 알리는 데 寄與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英國의 防火協會에서는 '83年 10月 發生한 馬山市의 高麗호텔 火災事故 資料도 보내 줄 것을 要請하고 있다.